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 11. 18.(월)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4년 10월 24일

○ 회부일자: 2024년 10월 24일

3. 제안 이유

○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안 제2조)

1) 지방공무원 총수: 3,480명 → 3,558명 (+78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3,136명 → 3,152명 (+16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335명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397명 (+62명)

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별표3)

1) 총계: 3,480명 → 3,558명 (+78명)

2) 일반직 계: 3,125명 → 3,141명 (+16명)

○ 5급 이하 소계: 3,085명 → 3,101명 (+16명)

3) 교육전문직원 계: 335명 → 397명 (+62명)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7명 → 359명 (+62명)

❍ 주요 내용으로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3,480명에서 3,558명으로 78명 증원하려는 것임

구 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별정직	합 계
현 행	1	3,125	12	335	7	3,480
개정안	1	3,141	12	397	7	3,558
증 감	-	+16	-	+62	-	+78

❍ 세부 증원 내용

직종	구분	사업명	정원	배정시기	세부내역
일반직	순증인력	**유보통합추진**	13	`25.3.1.	· 5급 이하 13명 - 본청 유초등교육과 3명 - 교육지원청 10명(청주 4명, 충주 · 제천 · 옥천 · 진천 · 괴산증평 · 음성 각 1명
	순증인력	**유보통합추진(장애영유아)**	3	`25.3.1.	· 5급 이하 3명 - 본청 창의특수교육과 1명, - 직속 특수교육원 1명 - 교육지원청 1명(청주)
일반직 소계			**16**		
교육전문직	순증인력	**늘봄학교(늘봄지원실장)**	58	`25.3.1.	· 5급 상당 이하 58명 - 공립 각급학교 배치(일반 57교, 특수 1교)(늘봄지원실장)
	순증인력	**유보통합추진**	2	`25.3.1.	· 5급 상당 이하 2명 - 본청 유초등교육과 2명
	순증인력	**유보통합추진(장애영유아)**	2	`25.3.1.	· 5급 상당 이하 2명 - 본청 창의특수교육과 1명 - 교육지원청 1명(청주)

직종	구분	사업명	정원	배정시기	세부내역
교육전문직 소계			62		
합계			78		

가. 유보통합 추진

○ 2023.12.08.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2024년 교육부 <교육개혁 9대 과제>로 유보통합이 선정되었음

○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중앙부터 지방으로 순차적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3단계에 거쳐 실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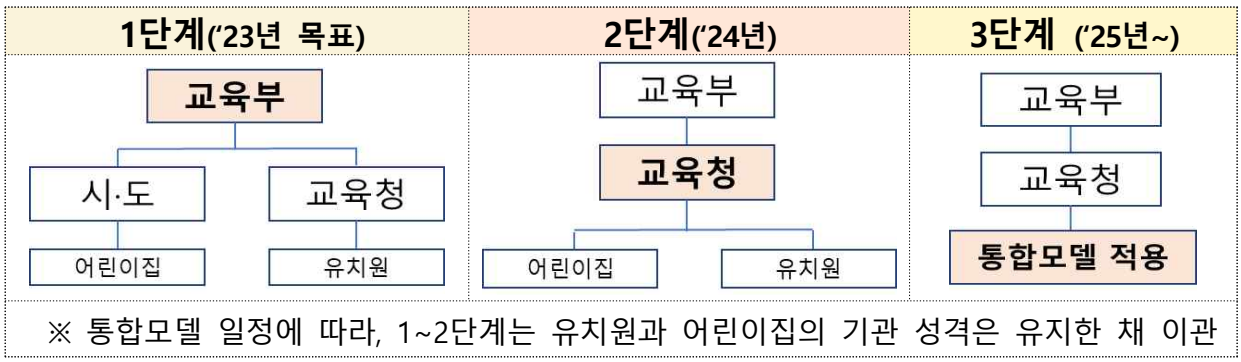

※ 통합모델 일정에 따라, 1~2단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성격은 유지한 채 이관

○ 유보통합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2025부터 유보통합 관련 준비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청 중심의 안정적 이관 추진을 위해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본격 이관하기 이전에 보육사무·재정 이관 준비 및 유보통합 5대 상향·통합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추진팀은 7명으로 일반직 5명, 교육전문직 2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 ’25.3. 기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정원 증감 현황

구분	본청			지역교육청		
	부서	직종	인원	지역	직종	인원
영유아	유초등교육과(유보통합팀)	일반직	3	청주	일반직	4
		교육전문직	2		교육전문직	
				충주, 제천, 옥천, 진천, 괴산증평, 음성	일반직	6(각1명)
장애영유아	창의특수교육과	일반직	1	청주	일반직	1
		교육전문직	1		교육전문직	1
	특수교육원	일반직	1			

○ 2025년 본청에 배치 예정인 인력은 영유아 담당 인력으로 유초등교육과에 일반직 3명, 교육전문직 2명, 청주교육지원청에 일반직 4명, 충주·제천·옥천·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총 6명을 증원하고, 장애영유아 담당 인력으로 창의특수교육과에 일반직 1명, 교육전문직 1명, 특수교육원에 일반직 1명, 청주교육지원청에 일반직 1명, 교육전문직 1명임

<유보통합 증원 인력 담당업무>

□ 일반직

사업명	배치부서	인원	담당업무
유보통합추진	본청 유초등교육과	3	·영유아 교육·보육정책 예산 및 집행 ·유보통합 대비 교육과정 운영 분석 지원 ·5대 상향평준화 과제 및 통합과제 추진 지원 ·유보기관 운영위원회 비교 분석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비교 분석
			·대상기관: (충북도) - 영유아 보육 사무 습득 - 적정 이관 방안 모색 및 지역별 이관 추진 - 공동수행(협력)사무 추진 - 영유아 보육 사무 매뉴얼 작성
	청주 유초등교육과	4	·대상기관: (7개 시군구) - 영유아 보육 사무 습득

사업명	배치부서	인원	담당업무
	충주 교육과	1	- 적정 이관 방안 모색 및 지역별 이관 추진 - 공동수행(협력)사무 추진 - 영유아 보육 사무 매뉴얼 작성
	제천 교육과	1	
	옥천 교육과	1	
	진천 교육과	1	
	괴산증평 교육과	1	
	음성 교육과	1	
유보통합추진 (장애영유아)	본청 창의특수교육과	1	·장애전담(통합)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장애영유아 통계 관리 ·장애전담(통합)어린이집 정부 지원 현황 분석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예산 관리 및 결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인력 관련 업무 ·특수교육 분야 유치원-어린이집 교구·설비 기준 분석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홍보
	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	1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관련서비스 총괄 ·통합지원 대상 장애영유아 현황 관리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통학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재배정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치료지원 지침 관리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치료지원 현황 모니터링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교원 연수 운영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 홍보
	청주 특수교육 지원센터	1	·청주 관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현황 관리 ·장애영유아 보육 사무 습득 ·진단평가 예산 관리 및 지출 ·장애영유아 관련서비스 예산 관리 및 지출 ·장애영유아 치료지원 전자시스템 총괄 및 치료지원 카드 발급 ·장애영유아 치료기관 점검

□ 교육전문직원

사업명	배치부서	인원	담당업무
유보통합추진	본청 유초등교육과	2	·유보교육정책담당 총괄 및 기획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기관 분석 및 운영 ·유보통합 정책연구 추진 ·영유아 심리정서지원 계획 및 운영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강화 기획 및 추진 ·유치원 상시입학제 도입 추진 ·보육과정, 연장과정, 돌봄 등 조사·분석 및 교육과정 연계 추진 ·유보정책 관련 지역사회 연계 사업 추진 ·유보교육정책 홍보
유보통합추진 (장애영유아)	본청 창의특수교육과	1	·도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통합지원 계획 수립 ·장애영유아 관련 유관기관 연계 ·특수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과정 운영 분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계획 수립 ・진단평가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통합지원을 위한 TF운영
	청주 특수교육지원센터	1	・관내 어린이집 현황 및 장애영유아 통계 관리 ・관내 장애영유아 통합지원 기획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 안내 및 홍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순회교육 총괄 ・장애전담(통합) 어린이집 컨설팅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교원 컨설팅 ・학부모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실무

나. 늘봄학교

○ 2024.01.25.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도입하여 교원과 분리된 전담 인력을 운영하기로 함

○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2024년 충청북도 내 253개 초등학교 중 1학기에는 1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모든 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하고 있음

○ 2024년 초1 학년 학생이 희망하면 누구나 학교생활 적응과 성장·발달에 맞춘 다양한 놀이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이상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초2까지,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 늘봄학교 운영은 기존 교원을 늘봄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담 인력을 지원하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늘봄지원센터」,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늘봄지원센터」는 늘봄지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늘봄지원실」은 학교 내 교원업무를 경감하고자 함

○ ’24~’25년 추진 로드맵

〈교원과 늘봄학교 업무 분리 추진계획(안)〉

’24년 상반기(과도기)	’24년 하반기(과도기)	’25년(완성)
기존 교사를 늘봄학교 **신규업무에서 배제**	기존 교사가 맡고있던 **방과후업무 등에서 배제**	**늘봄지원실장 배치 추진**
기간제교원 배치	늘봄실무사 배치	지방공무원 증원배치 늘봄지원실장 단계적 전임발령

○ 늘봄학교 인력증원은 학교별 늘봄학교 업무 관리자로 늘봄학교 관련 기획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 57명, 공립 특수학교 1명을 증원하고자 함

〈늘봄학교 증원 인력 담당업무〉

분류	사업명	배치부서	인원	담당업무
교육전문직원	**늘봄학교**	공립학교 (특수학교 1명 포함)	58	・늘봄지원실장(학교별 늘봄지원실 업무 총괄, 늘봄학교 관련 인력 지휘・감독)

○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에서 발표한 〈늘봄지원실장 선발 배치 운영 세부 방안〉에 따르면 늘봄학교 교육전문직원은 임기제교육연구사로 교육 실경력(기간제교사 포함) 7년 이상,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2년 임기 동안 교육연구사로 늘봄지원실 업무를 총괄하여 늘봄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등의 복무를 관리하고 연간 운영 계획 등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민원 및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학교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3~6교당 1명을 중심학교에 배치하여 순회형식으로 근무할 예정임

〈2025년 늘봄지원실 기반의 완성형 늘봄학교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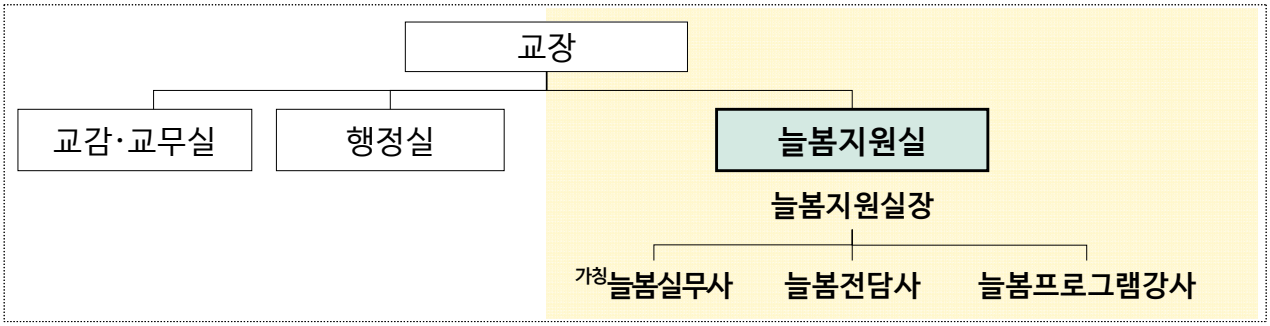

5.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1], 제20조에[2]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1)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2)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가. 유보통합 추진 인력 증원

○ 영유아 보육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교육청-지자체 간 인력 교류 및 지역 내 실질적 유보통합 추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유보통합 담당 전문 인력 확보는 필수 사항으로 판단됨

○ 유보통합의 행·재정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 관리체계를 광역·기초 일괄 이관을 원칙으로 관계 기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관 방안을 확정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차이를 고려하되, 유형별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강화,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 및 제도적 확산을 위하여 보육 관련 업무 이관을 담당하는 인력증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에 순증 되는 인력 중 보은, 영동은 옥천교육지원청 권역으로, 단양은 제천교육지원청 권역으로 업무를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유보통합 일원화를 위한 업무 이관 시점이 정해진 후에는 협의를 통해 지원청별 인력을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교육청은 유보통합 전담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기반 마련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통합 계획에 맞춰 안정적 행정·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세부 과제별로 소요 예산을 추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늘봄학교 추진 인력 증원

○ 2024년 7월 늘봄학교 전담 인력인 늘봄실무사 신규 배치가 완료되어 기존의 교사가 맡고 있던 방과후학교 업무 등까지 포함하여 기존 방

과후와 돌봄을 포함한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별 늘봄업무관리자로서 늘봄지원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늘봄지원실 소속 직원 등 늘봄학교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 기존 교감 및 방과후 부장이 맡고 있던 늘봄학교 관련 기획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늘봄지원실장 인력증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늘봄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 학교장이 업무의 성격, 업무 부담의 정도를 고려하여 늘봄지원실의 업무 분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늘봄지원실장 배치의 원칙인 교원과 분리된 업무의 전담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별첨 <교육부-유보통합 추진체계 및 전략>

* 시범사업의 명칭은 통합기관 명칭 확정에 따라 결정

[참고자료] 늘봄지원실장 선발·배치·운영(안)

※ 추후 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직종)** 임기제교육연구사(교육전문직원)
- **(역할)** 학교별 **늘봄학교 업무 관리자**로 늘봄학교 관련 기획 및 조정 업무 수행
  (예시: 늘봄학교 운영 계획 수립, 지원실 소속 늘봄인력·강사 관리 및 갈등 조정, 민원 처리 등)
- **(임기) 2년 임기** 동안 교육연구사로 전직·근무하고, 임기 종료 후 **연장 없이 교사로 재전직**
  (교사 복귀 전 일반 장학사 선발 시험에 응시 기회 부여하지 않으며, 복귀 후 2년 이상 교사로 근무 후 일반 장학사 선발 시험 응시 기회 부여)
- **(선발규모)**
  - 공립 초등학교: '25학년도: 57명
  - 공립 특수학교: '25학년도: 1명
- **(선발일정)**
  - 공고: '24. 11월 중
  - 시험: '24. 11~12월 중 [서류전형, 기본소양평가(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역량평가(심층면접 등) 예정]
  - 지원: 희망 근무지역 3개 지역까지 작성·지원(지역별 우선순위 작성)
  - 배치: '24. 3. 1. 자
- **(응시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 응시 가능]

1) 늘봄지원실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되어 추천된 자
2) **교육실경력(기간제교사 포함) 7년 이상**이고,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
   ※ 교육실경력: 모든 휴직, 군경력, 파견 등(연수 및 대학원, 시·도교환파견 등)을 제외한 실제 학교 근무 경력(단,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파견 경력은 인정)
3)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우리 교육청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 정규 교사
   ※ 초등분야: 초등학교교사, 특수분야: 초등학교(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초등)
4) 교육행정기관 파견교사의 경우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
5) 초빙교사의 경우 계약 만료 예정자

- **(배치)** 중심학교에 배치되어 순회형식 근무
  - '25학년도: 학교규모 및 지역여건 고려 3~6교당 1명 배치

- **(복무)** 일반적인 교육전문직원과 동일(단, 학교 소속으로 학교장이 지휘감독), 학교 상황에 따라 **연가, 유연근무 활용** 가능, **방학 중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 **불가**
- **(승진) 월 평정점 0.015(일 평정점: 0.0005)**
  ※ 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별표1] 선택가산점 6. 1정 보직교사 교육전문직원 경력으로 인정 예정이며, 이외의 가산점 항목은 모두 불인정(단, 개인연구 및 연수 실적은 인정)
- **(보수 등)** 직급보조비, 연구업무수당 등을 지급하여 최소 **담임 교사 수준의 급여 지급**
  (연가보상비 지급 검토 중, 여비규정에 따른 순회여비 지급)